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70

발의연월일: 2020. 11. 20.

발 의 자: 박수영・김미애・하태경

이주환 • 전봉민 • 김도읍

서병수 · 정동만 · 황보승희

안병길 · 이헌승 · 장제원

조경태 · 김희곤 · 백종헌

의원(15인)

제안이유

부산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800만 여 명 국민들의 염원이었으나, 20여년이 넘게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국가적·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관문 공항이 필요하고, 동남부권 경제 발전,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수요에 대비하여 확장성과 접근성을 갖추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국제공항의 건설이 무엇보다 시급함.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주요 도시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등 핵심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의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산광역시 가덕도에 건설할 신공항 개발계획의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신속한 건설에 필 요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세계와 교류하는 국제공항이자 관문공항으로서 부산가덕도신공항 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신공항은 김해국제공항을 이전하고 새로이 부산광역시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임(안 제2조).
- 다. 신공항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관문공항이자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시설로 건설함(안 제3조).
-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산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를 통해 실 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 하여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안 제12조).
- 마. 신공항 건설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 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 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건설

지 관할 광역단체장 등으로 함(안 제22조).

- 바.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 통부장관 소속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둠(안 제23조).
- 사. 정부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 아.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준용하며,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소화한 절차의 보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 자.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33조).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산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여객·물류 중심의 관문 공항, 세계와 교류하는 국제 공항을 건설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부산가덕도신공항"이란 김해국제공항을 이전하고 새로이 부산광역시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이하 "신공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 2. "신공항 건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
 - 나.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 도로·항만시설 등의 건설
 - 다.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화물·항공· 유통·편의·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과 관련된 시설의 조 성

- 라.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배후 신도시와 생활편익시설의 조성
- 마. 신공항 건설에 따른 물류 기반 구축과 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 개발 인프라 건설
- 바.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사.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 3.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 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 4.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이란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에서 신공항 건설 예정지로 지정한 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이 구현되도록 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한다.
 - 1.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동남권 관문 공항
 - 2. 24시간 운항 가능한 국제 공항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주요 도시로부터 신공항까지에 이르는 도로와 철도 등 광역 교통망의 확충
 - 3.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 ·비행장의 규모
 - 4.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국토의 균형 발전

- 5.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시설의 조성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 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 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특례보다 완 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신공항 건설 등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신공항 건설사업의 주요방향
 - 2. 신공항 건설사업의 개요
 - 3. 건설기간
 - 4. 자금계획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상남도지사(이하 "관계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에 따른 신공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① 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법」 제6조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

-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자 외의 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 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3.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
 - 4. 공정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기간
 - 5. 연도별 투자계획·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 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물 등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물 등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이 있는 경우 그 실시협약서를 포함한다)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실시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
- 2.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 3.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의 타당 성 여부
- 4. 제1항제6호의 계획 및 실시협약서의 타당성 여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등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 등

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이 법에 따른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 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 허가 및 점용·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 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의 고시
-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 ·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번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 의 점용허가
-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 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 18.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1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 21.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2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2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 2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28.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항로표 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13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필요하게 되거나 신공항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를 신공항 건설사업으로 보고해당 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5조(토지 등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6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 공항 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②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

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같다) 및 매각・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양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 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 제1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8조(주변지역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이하 "주변지

- 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주변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의 범위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확인·준공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제22 조에 따른 신공항 지원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 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준공확인을 한 결과 신공항 건설사업이 제10

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20조(공사완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선수금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 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공급가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신공항 건설 추진기구

제22조(신공항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신공항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공항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3. 신공항 건설에 대한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신공항 건설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 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 안전부장관, 신공항 건설지역의 시·도지사,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⑤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신공항 건설 추진 및 운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련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⑨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신공항 건립추진단) ①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둔다.
 - ② 신공항 건립추진단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둔다.
 - ③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의 업무) 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 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3.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 4. 제19조에 따른 준공확인
 - 5. 제21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 6. 신공항 건설사업 지역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

력과 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 7. 신공항 건설사업 지역 내 토지 등을 이용한 수익사업
- 8. 신공항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25조(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자료·자문을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26조(임직원의 파견 등) ① 신공항 건립추진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신공항 건립추진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장 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원

제27조(재정 지원) 정부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 법」,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 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 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 면 점용료ㆍ사용료,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민간자본 유치) 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에 드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30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 지역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31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 건설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32조(사전타당성조사의 실시에 관한 특례)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준용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한 보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3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

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34조(실시설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 공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토지·건물 등의 사용허가 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신공항 건설 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이경우 사용허가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가 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 야 한다.

- 제3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 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37조(신공항 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제50조 및 제53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 조제4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 2.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소방·방재·방화·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② 사업시행자는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공항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전기 및 전기통신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

0조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 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신설·증설 또는 이전할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에 대하여 국제항공 노선을 개설하기 전이라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제3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 건설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9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40조(보고·검사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